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법인 및 인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 제공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부여 마련을 통해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에게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모집개요	◦모집지역 : 전국 ◦모집대상 : 농업법인 및 청년인턴 희망자 **◦모집기간 : 2021.04. ~ 목표인원(200명) 충족까지**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지원내용	◦농업법인에 채용 인턴 1인당 월 급여의 80%이내(월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969.6만원(최대 6개월)까지 법인당 최대 3명 지원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및 청년

2. 사업자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청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과거에 지원받은 자(중복지원 불가)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선정이 취소된 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또는 반복참여 제한
농업법인 등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받고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 *부당사용금액(농림사업 제한기간) : 5억원 이상(5년), 3억원~5억원 미만(4년), 5천만원~3억원 미만(3년), 2천만원~5천만원 미만(2년), 2천만원 미만(1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법인

3.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미만 (주민등록 상 '82.01.01. ~ '03.12.31. 출생자)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최소3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 ◦재학생인 경우,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청년만 가능하며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등 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참여가능
농업법인 등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농업법인(참고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농업법인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단,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①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②상시종사자 5인 이상, ③경영규모 기준표 [참고2] 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 *단,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의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우선선정

구 분	내 용
청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자 ◦비대면 업무를 위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자격증 취득한 자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자 또는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등
농업법인 등	1순위. 청년 희망 직무 부여 예정자,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항의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 2순위. 선도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ICT(정보통신기술)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하여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 ①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②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③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3순위.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5.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청년	필수서류	◦사업신청서[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서 작성]
농업법인 등	필수서류	◦사업신청서[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서 작성]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명의) : 공고일 이후 발행 ◦최근 2년 재무제포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우선순위 1·2순위 법인인 경우(청년농업인 대표 등),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매출액 증빙으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신청 시, 고용계약 시 2회 제출
	우선선정 증명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는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며(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 농업경영체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 또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선정 관련 증명서류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설치한 <준공 후 안내문>의 사진, 그 외의 경우 복합환경제어기(복합환경제어시스템) 생산자와의 계약체결서 또는 제어기 구매영수증 등 ◦선도농업법인 : 신지식농업인 증서, 현장실습장 인증서, 농업마이스터 지정서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농업법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타 우선선정 관련 증빙서류

* 이 외 주관기관이 자격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참고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별표6)**

[별표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 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참고2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표

품목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고소득 전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성장가능농	성장한계농
농가 소득	100백만원 초과	100 ~ 60	60 ~ 30	30 ~ 15	15미만
쌀	○ 10ha 초과	○ 6ha 이상	○ 6 ~ 3ha	○ 3ha 이하	○ 1ha미만
과수	○ 2.5ha 초과 (사과, 배,포도) ○ 3ha 초과 (복숭아, 단감, 귤)	○ 1.5ha 이상 ○ 2.0ha 이상	○ 1.5 ~ 0.7ha ○ 2.0 ~ 1.0ha	○0.7ha 이하 ○ 1.0ha 이하	○ 0.2미만 ○ 0.3미만
화훼	○ 1ha 초과 (절화류) ○ 0.5ha 초과 (분화류)	○ 0.6ha 이상 ○ 0.3ha 이상	○ 0.6 ~ 0.3ha ○ 0.3 ~ 0.2ha	○ 0.3ha 이하 ○ 0.2ha 이하	○ 0.1미만 ○ 0.1미만
채소 특작	○ 2ha 초과 (시설)	○ 1.0ha 이상	○ 1.0 ~ 0.5ha	○ 0.5ha 이하	○ 0.2미만
	○ 2ha 초과 (노지/복합농) ○ 5ha 초과 (노지/전업농)	○ 1.5ha 초과 ○ 3ha 초과	○ 1.5 ~ 0.5ha ○ 3 ~ 1.5ha	○ 0.5ha 이하 ○ 1.5ha 이하	○ 0.3미만 ○ 0.5미만
	○ 7ha 초과(인삼)	○ 4.0ha 초과	○ 4.0 ~ 1.5ha	○ 1.5ha 이하	○ 0.5미만
축산	○ 한우 170두 ○ 젖소90두 ○ 돼지 25백두 ○ 닭 9만수 초과	○ 한우 100두 ○ 젖소 50두 ○ 돼지 15백두 ○ 닭 5만수이상	○ 한우 100 ~ 50 ○ 젖소 50 ~ 30 ○ 돼지15 ~ 5백 ○ 닭 5 ~ 2.5만	○ 한우 50 이하 ○ 젖소 30 이하 ○ 돼지 5백 이하 ○ 닭 2.5만 이하	○ 15미만 ○ 10미만 ○ 160미만 ○ 8천미만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하나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가능